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
----------	-----

2023. 7. 2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2023년 7월 13일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재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학교장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 (안 제6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1978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0월 15일을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모든 동물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동물권’을 선언하였고, 인간이 다른 동물의 권리를 착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5.31.)되면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5.4%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매년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11만 마리가 넘어서고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사례도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유기동물 발생 추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118,711	133,536	128,888	117,039	112,406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관리시스템(API)

<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 >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233	304	531	914	992

자료 : 경찰청

○ 특히,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동물학대 N번방’으로 일컬어지는 범죄¹⁾가 발생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²⁾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생명 존중’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1)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동물판 N번방’ 야생동물 도살 영상 보낸 20대 (MBN 뉴스 / 2023. 6. 2.)
 ‘양구 고양이 학대범이 10세 미만 초등생이라니’ ...처벌 고심 (국민일보 / 2023.01.03.)

2)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로 간주. ‘동물학대가 사람에게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반사회범죄’로 분류하고 관련 데이터를 집계해 관리.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의미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의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생명존중 교육, 동물학대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도록함.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¹⁾에 포함하도록 규정,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의 목적 및 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1)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

교과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관련성(예시)

구분	효도와 공경	생명 존중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	부모 교육	정보윤리
초1~2	국어(1), 통합(3)	통합(2)	국어(2), 통합(4)	통합(1)	
초3~4	도덕(2)	도덕(1)	국어(1), 사회(1), 도덕(2) 미술(1), 체육(1)	도덕(1)	국어(1), 사회(2)
초5~6	국어(1), 실과(3)	과학(1), 실과(1)	체육(1), 사회(2), 도덕(3)	실과(2)	국어(5), 도덕(2), 실과(1), 미술(2)
중학교	국어(1) 도덕(1) 기술·가정(2)	도덕(2), 과학(1), 기술·가정(1), 환경(1), 보건(1)	사회(3), 도덕(2), 국어(1)	도덕(1)	국어(3), 사회(1), 도덕(2), 기술·가정(1), 정보(1), 보건(1)
고등학교 (공통)	생활과 윤리(1)	통합사회(1)	국어(2), 통합사회(4)	기술·가정(2)	국어(2), 통합사회(3)
고등학교 (선택)	윤리와 사상(1)	생활과 윤리(7) 윤리와 사상(1) 고전과 윤리(2)	고전(1) 화법과 작문(1) 정치와 법(4) 생활과 윤리(3) 윤리와 사상(1) 고전과 윤리(1)	생활과 윤리(1) 가정과학(1)	생활과 윤리(5) 윤리와 사상(1) 정보(4)

※ 괄호 안의 숫자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연계할 수 있는 수업 시수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 이와 함께, 현재 ‘2023. 과학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¹⁾과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등에 따라 환경기념일 계기 교육 및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으로 진행해 오던 생명존중 및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내실있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전문적인 예방교육 및 지원, 협력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가 기대됨.

1) 제14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동물 해부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동물실습, 동물윤리,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수 및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동물 해부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동물윤리, 생명윤리 교육을 실습 전에 실시해야 한다.

동물학대 예방교육 관련 시도 교육청 조례 현황 (2023. 06월 기준)

지자체	조례명	제정시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0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2022.02.2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2021.08.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	2023.01.03.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 이에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학생들의 인성함양 등 교육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물보호법」이 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중심인 만큼, 충청북도교육청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2009.4.10.제정)에 따른 동물복지 종합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수립 및 시행한다면 ‘생명존중 정서함양’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 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 입법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관련 내실 있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조례안에 따라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